

한강하류권역(창릉천외 5개소)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반영결과

2020. 3



국 토 교 통 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개요

1.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개요

1.1.1 법적근거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 15조』규정에 따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공고하고 계획 수립기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관할 시·구(서울특별시 은평구, 강서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의 환경관련부서에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

1.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 계획 수립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공고일자

- 2017년 5월 25일(목)

(3) 공고 일간지

- 문화일보(일간신문), 아시아타임즈, 인천일보, 경기일보(지역신문)

(4) 공람기간

- 2017년 05월 25일 ~ 2017년 06월 17일(공휴일 제외)

(5)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맑은도시과), 강서구청(환경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환경과), 부평구청(환경보전과)
- 고양시청(환경보호과), 김포시청(환경정책과), 부천시청(환경정책과)

(6)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비 고
2017. 06. 01(목) 14:00	고양시 능곡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	창릉천(서울시 은평구, 고양시 구간) 대장천, 도촌천, 장월평천(고양시 구간)
2017. 06. 02(금) 10:30	김포시 양촌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	봉성포천, 서암천 및 굴포천 일부 (김포시 구간)
2017. 06. 02(금) 14:00	계양구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굴포천(서울시 강서구, 인천시 계양구·부평구, 부천시, 김포시 구간)

(7)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 시작일로 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

(2) 정보통신망 게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통합검색

민원마당
국민마당
국토지식정보
알림마당
정보마당
우리청소개

알림마당

국토관리청공고

제목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조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작성자	정종선
전화번호	02-2110-6845		
등록일	2017-05-25	조회	6
첨부파일 1	3. 주민의견 제출서.hwp		
첨부파일 2	2. 조안 요약문.pdf		
첨부파일 3	20170525083941894_공고문5.hwp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중인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5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조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2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결과

1.2.1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일 시	장 소	참석자	비고
2017. 06. 01(목) 14:00	고양시 능곡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	11인	
2017. 06. 02(금) 10:30	김포시 양촌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	6인	
2017. 06. 02(금) 14:00	계양구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10인	

1.2.2 주민설명회 사진

	
2017년 06월 01일(목) 14:00 능곡동 주민센터 회의실	2017년 06월 02일(금) 10:30 양촌읍사무소 대회의실
	
2017년 06월 02일(금) 14:00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반영결과

2.1 주민의견 수렴결과

- 공람기간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으며, 설명회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표 2 - 1 〉 주민의견 수렴 결과(설명회)

구 분	주 민 의 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서울시 은평구 / 고양시	<주민 1> ○ 하천 수위 상승시 농경지측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	○ 금회 주민설명을 수행한 창릉천외 3개소 지방하천의 기본계획은 계획빈도 창릉천 100년 빈도, 대장천 80년 빈도 등 계획빈도에 해당하는 홍수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치수계획 수립 용역임 또한, 내수침수방지를 위해 기존 시설물의 능력 검토를 통한 시설물확장 및 신규시설을 계획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주민 2> ○ 대장천의 경우 상습침수지역으로 그에 따른 계획수립 필요	○ 상습침수지역은 금회 산정된 계획빈도 홍수량 유하시 제체의 월류 및 내수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방보강 및 확장을 통한 홍수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대장천수계가 합류되는 신평배수펌프장의 능력검토를 통한 항구적인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음	반 영
	<주민 3> ○ 공사완공 시기가 언제쯤 인지 설명요망 ○ 공사완료 후 지역주민이 얻는 효과에 대한 설명	○ 공사시행은 기본계획완료 후 사업의 경제성 검토를 통한 우선순위를 결정 후 공사시행이 될 예정이며, 정확한 공사시행은 추후 세부설계를 통해 확정될 예정임 ○ 공사시행으로 농경지 및 주거지의 침수예방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천 내 환경정비를 통한 수질정화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반 영
김포시	○ 의견 없음	-	-

(표 계속)


구 분	주 민 의 건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p><주민 1> ○ 굴현보 관리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의 방향</p>	<p>○ 해당없음</p>	
<p>서울시 강서구 /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 / 부천시 김포시</p>	<p><주민 2> ○ 상류지역 퇴적물에 대한 대책 ○ 하도준설시 하상시설물에 대한 대책 ○ 청천천, 갈산천 퇴적물에 대한 대책 ○ 제방보축에 따른 교량검토 및 대책 ○ 현재 진행 중인 유지용수 공급사업에 따른 향후 생태계 변화에 대한 검토 요망 ○ 가마우지 등 조류에 의한 교량 등 시설물 피해가 있음. 조류서식지 조성 등의 대책마련 필요</p>	<p>○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p>	

(표 계속)

구 분	주 민 의 건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서울시 강서구 /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 / 부천시 김포시	<주민 3> ○ 굴포천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관거 개선 등의 대책 필요 ○ 당미교~굴현보 구간이 오니토준설에서 제외된 사유 ○ 오니토 준설에 따른 약취발생 등에 대한 대책 필요 ○ 우안 제1호 배수문 위치 재고를 통한 하천선형 개선 필요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2.2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1) 한강유역환경청

 <p>한강유역환경청</p> <p>수신 수신자 참조 (공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알림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p> <p>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1661(2017.5.22)호 관련입니다.</p> <p>2. 귀 청에서 검토 요청한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불합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번호 : HG20170276)</p> <p>3.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p> <p>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1부. 끝.</p> <p>한강유역환경청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환경영향평가과</p> <p>주요담당관: 권정현, 주우준, 이은숙, 최정, 오영민, 유민, 2017.6.15. 주소: 서울 환경평가과-4003 01012, B. 15.) 특수: 02-312-0209 01017, B. 15.) 우 12000 경기도 하남시 석사동(행정동 229 (행정동 6) 환경영향과 / http://hag.mae.go.kr 연락처 031-390-3822 팩스번호 031-790-2977 / hlab@hag.mae.go.kr / 팩스번호</p>	<p>서장번호 : HG20170276</p> <p>[붙임]</p> <p>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p> <p>I. 사업개요</p> <p>○ 계획 명 :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p> <p>○ 위치 및 범위</p> <table border="1"> <thead> <tr> <th>이칭명</th> <th>시 점</th> <th>하 천 구 간</th> <th>종 점</th> <th>연장 (km)</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td> <td>-</td> <td>69.14</td> </tr> <tr> <td>교포천</td> <td>인천시 부평구 감산동 193-61번지</td> <td>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한강합류점</td> <td>-</td> <td>15.23</td> </tr> <tr> <td>창릉천</td> <td>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요차동 산도리</td> <td>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광매동 한강합류점</td> <td>-</td> <td>16.42</td> </tr> <tr> <td>대청천</td> <td>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td> <td>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달면 신왕유수지합류점</td> <td>-</td> <td>5.44</td> </tr> <tr> <td>도운천</td> <td>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서서동</td> <td>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달면 한강합류점</td> <td>-</td> <td>5.52</td> </tr> <tr> <td>봉선포천</td> <td>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미서리</td> <td>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한강합류점</td> <td>-</td> <td>8.93</td> </tr> <tr> <td>시영천</td> <td>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교정리</td> <td>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봉선포천합류점</td> <td>-</td> <td>6.87</td> </tr> <tr> <td>장월천</td> <td>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파동</td> <td>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한강합류점</td> <td>-</td> <td>8.73</td> </tr> </tbody> </table> <p>○ 계획내용 : 축계, 보축, 호안, 배수시설, 교량, 보 및 낙차공, 하도준설 등</p> <p>○ 계획수립자(승인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p> <p>○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제2항 -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p> <p>II. 검토의견</p> <p>1. 총 관</p> <p>○ 본 검토의견은 국토원(국가하천) 외 지방하천 6개소의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것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p>	이칭명	시 점	하 천 구 간	종 점	연장 (km)	계	-	-	-	69.14	교포천	인천시 부평구 감산동 193-61번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한강합류점	-	15.23	창릉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요차동 산도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광매동 한강합류점	-	16.42	대청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달면 신왕유수지합류점	-	5.44	도운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서서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달면 한강합류점	-	5.52	봉선포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미서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한강합류점	-	8.93	시영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교정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봉선포천합류점	-	6.87	장월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파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한강합류점	-	8.73
이칭명	시 점	하 천 구 간	종 점	연장 (km)																																										
계	-	-	-	69.14																																										
교포천	인천시 부평구 감산동 193-61번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한강합류점	-	15.23																																										
창릉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요차동 산도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광매동 한강합류점	-	16.42																																										
대청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달면 신왕유수지합류점	-	5.44																																										
도운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서서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달면 한강합류점	-	5.52																																										
봉선포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미서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한강합류점	-	8.93																																										
시영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교정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봉선포천합류점	-	6.87																																										
장월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파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한강합류점	-	8.73																																										
<p>서장번호 : HG20170276</p> <p>- 하천환경과 수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하고, 하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보전하는 등의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수립·반영하여야 함.</p> <p>○ 사업대상 하천 중 중요 보호지역(한강하류구습지보호지역 인근,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 생태자연도 1등급 인근 지역 등) 및 하천자연도 등급이 높은 지역은 보전 및 복원지구로 지정하여야 함.</p> <p>- 농 지역은 하천시설물 침착을 방지하고 수변식생 원형보존, 보 및 낙차공 철거를 우선 고려하여야 함.</p> <p>2. 세부 검토내용</p> <p>가. 계획의 적정성</p> <p>○ 상위 및 관련 계획(중앙정부 상위계획 및 지자체 관련계획)과 연계 하여, 유역 단위의 일관성 있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 본 평가서는 치수관리를 위한 통수단면의 확보 및 안전성 확보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p> <p>- 환경보전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p> <p>○ 각 국가(지방)하천별 관리를 위한 별정계획이므로 하천별 상세한 현황과 보전시책, 시설계획 및 시설물 관리대상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p> <p>○ 한강 하류역은 대도시를 유역하는 하천일에도 불구하고 그간 군사적 사유로 하천 및 수변 생태계의 보전이 양호하게 유지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바, 이와 합류되는 지천에도 이에 준하는 관리방향을 설정하여야 함.</p>	<p>서장번호 : HG20170276</p> <p>- 특히 하구역은 습지, 철새도래지, 기수역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하천의 고유한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 하천구역인 바, 한강으로 합류되는 각 하천의 하류는 우선적으로 원형보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보전지구로 지정</p> <p>○ 북한산 국립공원 및 진관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한 장동천 상류부는 보전역 관리 및 복원적 시설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 함.</p> <p>나. 입지의 타당성</p> <p>1) 자연환경의 보전</p> <p>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p> <p>○ 각 하천별로 사업대상 하천 중 생태자연도 1등급, 야생생물 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철새도래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을 명기 하고 사업대상 하천의 일부구간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들 구간은 수변식생 원형보존, 하류(합류)부 보전방안 등의 사업 계획과 함께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 노란관산장자리(벚마)의 분포가 확인된 장동천의 개수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서식지 보전 및 관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 한강 하류는 한강하류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의 관리가 필요한 하천구역이므로 본 구간에 합류되는 하천의 하류역은 하도 및 저수호안정비를 방지하고 하중도 등을 포함한 현재의 하천 및 수변식생 구조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여야 함.</p> <p>○ 하천이 현재 지니고 있는 유수역의 중요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수의 흐름에 있어 여울·요람·채의 반복적인 구배가 유지 되어 다양한 미소서식지가 유지되어야 함.</p>																																													


<p>사업번호 : HG2017027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에서 법정보호종인 살·큰기러기·노란잔산잠자리·금개구리가 발견되었으므로, 생태특성을 고려한 적정 보호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수변 및 하천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법정보호종(산 등)이 확인된 하천(구비) 및 정체를 명기하고, 하천-산림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하천구역의 정비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를 일정 기간별로 정비(계획 또는 계획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천화 현상을 보이는 하천 구간의 정비는 갈수기를 활용하도록 공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연중 수량을 유지하는 하천의 경우 수중생물의 번식기 및 산란시기를 가급적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하중도의 경우 물리적 영향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천정비 시 유념하여야 하며, 자연식생들을 최대한 보전하고 우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생군락에 대하여서는 이들의 분포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각 하천별 적용할 예정인 호안공법들은 구간별로 명확한 형식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하천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으로 적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의 도입을 저해하는 호안공법(자연석쌓기, 파라넷 등)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수변부 기능을 저해하고 육수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들은 적용을 지양 ○ 사업대상 하천에 분포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하여 종별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대책(제거시기, 제거방법, 확산·재정착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 교란 생물 현상관리 핸드북(2016, 환경부)' 등 참고 	<p>사업번호 : HG20170276</p> <p>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 또는 낙차공은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및 통수 효과를 저해하므로 존치 및 재가설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가설 및 존치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이를 지양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 및 낙차공의 존치·재가설 계획(11개소)은 재검토하고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제시 - 유속과 수량이 감소하는 곳에서의 생태적 기법에 대한 수단적 대안 적용 - 각 하천별 보 및 낙차공의 현황과 기능 분석 후 철거 및 존치 여부를 명시 - 시설물에 대한 현황(시설상태, 어도유무 등)과 존치·재가설 시 개선방안 등의 상세한 내용 제시 <p>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하천 중 북한산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에 포함 또는 인접한 구간과 호안이 현재 자연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산지나 초지 등 자연경관 요소와 연결한 구간에 대해서는 호안 등 시설물 조성을 최대한 지양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구간에 하천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그 필요성을 명시하고 이격거리와 단면도, 공사용 가도 또는 경관시뮬레이션 분석도 등을 작성하여 시설물 설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부득이 호안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경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식생활악이 우수한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p>사업번호 : HG2017027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인위적인 시설물 도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식재되는 식물 종은 현지 수변식생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경관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하천시설물(축제, 호안, 교량 등)의 형태, 규모, 색채 및 재질 등은 주변환경에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전·후 경관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지점에서 축제, 호안 등에 따른 계획을 반영한 경관시뮬레이션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p>라) 수환경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은 홍수피해 이력과 원인 분석을 통해 계획하천 유역이 갖는 강우와 홍수 등 수문량 크기와 빈도, 홍수피해 잠재능에 따라 상위 치수계획에 부합함과 동시에 하천의 환경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기후 및 향후 유역 내 개발여건 등을 사유로 창릉천, 서암천, 장원평천에 대한 설계빈도를 80년—100년, 50년—80년으로 상향조정(354%)하여 파도한 시설물 위주의 치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3개 하천 총 34.02km 구간에 대해 육제 18.246km, 보축 22.916km, 보 및 낙차공·교량 재가설이 계획됨(9, 421-439쪽) - 위 계획하천의 설계빈도 결정 시 과거 홍수피해 이력과 원인, 제내지 토지이용, 하천의 중요도뿐만 아니라 수환경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홍수방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빈도를 채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별 침수피해 현황(침수 발생 시기와 원인 등)을 조사·제시하고, 급회 치수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 	<p>사업번호 : HG2017027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 평가 시 설계빈도(무계획, 50년, 80년, 100년)에 따른 수단·방법을 검토·제시 - 계획하천의 하천공사 시 소요되는 비용과 치수안정성 및 환경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방계획은 치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설물(주거지, 농경지 등)이 위치한 구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립 - 계획하쪽 결정(362-390쪽) 시 획일적인 하폭확장은 지양 -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개수 전·후의 홍수위를 비교해서 제시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북한산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칠새도래지 등)의 인접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 계획을 지양하고, 원형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굴포천의 경우 하도준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획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증빙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준설에 의한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효성이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준설 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굴포천의 환경부 수질 측정망 조사결과(285-288쪽) 4.1-18.2mg/ℓ으로 보통~매우나쁨이며, 현지조사 결과(297-308쪽) 1.4~6.7mg/ℓ으로 좋음~약간나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수질을 BOD기준 보통(Ⅲ)등급으로 설정(324쪽)한 바, 수질 개선방안 및 보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p>○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14.5)」에 따라 상기 사업시행 전·후의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및 삭감부하량을 산정·제시하여야 함.</p> <p>○ 지역개발사업은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 훈령 제1222호,16.6.29)」 제28조에 따라 관한 지방자치단체장 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동 방침 제29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p> <p>2) 생활환경의 안정성</p> <p>가) 환경기준 부합성</p> <p>○ 하천 저질에 대한 오염도 조사·분석을 통해 해당 하천의 퇴적물 오염도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하천저질의 오염현황은 해당 하천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수립, 준설도 이용방안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함.</p> <p>※ 하천 저질 조사를 위한 지점 및 분석대상 물질 선정은 주변 오염원 시설 분포를 고려하여야 함.</p> <p>○ 하천 저질 측정결과는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국립 환경과학원연구 제687호)'과 비교하여 오염도를 평가하여야 함. 평가 결과가 '약간나쁨' 보다 나쁜 상태로 판정될 경우,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함.</p> <p>나)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p> <p>○ 하천시설물에 대한 과도한 신설, 제거설, 이설 계획은 하천 생태계의 훼손, 천연자원의 남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 친 환경적 자원순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타 항목 검토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 하천시설물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p>	<p>- 교량, 보 및 낙차공 등 하천시설물의 신설, 철거 또는 제거설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성상·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매립, 소각, 재활용 처리 목표량(율) 설정</p> <p>- 해당지역(시·군·구)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치, 처리, 용량 등을 파악하여 처리 목표량(율) 준수 가능 여부를 평가·반영</p> <p>※ 처리 목표율 계획 시 해당지역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참고하고, 기본 계획이 미수립된 경우 해당 광역자치체(도·광역시·특별시)의 기본계획을 참고</p> <p>※ 해당지역 내 요구되는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타 지역 연계처리시설을 파악</p> <p>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p> <p>○ 지구 세분화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p> <p>- 「하천법」 제44조와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 보전계획 수립(국토교통부, 2015.10)과의 연계성이 확인되도록 제시</p> <p>○ 친수지구의 설정은 배후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이용이 민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한정하여 최소화하여야 함.</p> <p>- 친변 자연경관 및 하천생태 현황이 양호한 구간은 친수지구 설정하는 것은 지양</p> <p>- 친수지구의 설정은 가급적 동일 구간의 하천 양안에 모두 계획하기보다는 한쪽 편에 제한하는 것이 필요</p> <p>- 각 친수지구별로 해당 구간 및 배후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하천변 개발계획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추가 제시하고 급회 계획을 통해 설정된 친수지구 구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p> <p>※ 특정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친수지구로 지정할 계획인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단계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등을 제시하여야 함.</p>
<p>사업번호 : HG20170276</p> <p>※ 상위 및 관련 계획 상 친변 개념이 검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친수 지구 설정이 필요할 시에는 해당 계획의 내용을 제시하여 그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 계획하천 제외지 내 불법 경작지 및 농장의 경우 농업 혹은 축산활동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 되어야 함.</p> <p>- 계획하천 제외지 불법 경작지 및 농장 현황 조사</p> <p>- 불법 경작지 및 농장 보상 규모 분석</p> <p>- 불법 경작지 및 농장 관리와 관련된 계획목표시점 제시</p> <p>- 단기간에 관리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 대책 수립</p> <p>- 제외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 수립</p> <p>○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하천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하천관리 유도(558-563쪽)의 구체적인 방안(협의체 참여범위, 활동 범위, 단담의 주기, 주요 역할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동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p> <p>○ 사업대상 하천에 대한 하천자연도 등급산정 결과에서 2등급에 대해서는 보전지구로 선정하고 3등급은 복원지구로 지정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p> <p>3. 기 타</p> <p>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검토의견과 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p>	<p>사업번호 : HG20170276</p> <p>나.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정량화 하여야 함.</p> <p>○ 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p> <p>○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 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p> <p>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각 하천별 정비내용(시설물 설치계획)을 총괄표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끝.</p>

(2) 인천광역시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인천광역시</p> </div> <p>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결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회신(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p> <p>1. 하천계획과-1661호(2017.5.22.)와 관련입니다.</p> <p>2. 인천광역시(환경정책과)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p> <p>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인천광역시 인</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font-size: small;"> <tr> <td>주무관</td> <td>최영환</td> <td>직권좌담담당</td> <td>안경석</td> <td>환경영향평가</td> <td>530 2017. 8. 21.</td> </tr> <tr> <td>주소자</td> <td colspan="5"></td> </tr> <tr> <td>시책</td> <td>환경정책과-8216</td> <td>(2017. 8. 21.)</td> <td>업무</td> <td>하천계획과-2091</td> <td>(2017. 8. 21.)</td> </tr> <tr> <td>우</td> <td colspan="5">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곡로 29. (구월동) (구월8) / http://www.incheon.go.kr/</td> </tr> <tr> <td>전화번호</td> <td>032-440-3532</td> <td>팩스번호</td> <td>032-440-9883</td> <td>fcmh1@incheon.go.kr</td> <td>/ 대국민 공개</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11 (남산1동) 1117호 </td> </tr> </table>	주무관	최영환	직권좌담담당	안경석	환경영향평가	530 2017. 8. 21.	주소자						시책	환경정책과-8216	(2017. 8. 21.)	업무	하천계획과-2091	(2017. 8. 21.)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곡로 29. (구월동) (구월8) / http://www.incheon.go.kr/					전화번호	032-440-3532	팩스번호	032-440-9883	fcmh1@incheon.go.kr	/ 대국민 공개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11 (남산1동) 1117호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사업 개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강서구,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 경기도 부천시·고양시·김포시 일원 ○ 규모 : 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6개소 (L=69.14km) ○ 계획 수립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승인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div> <p>I.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 하천의 유지관리 등 치수·이수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하천계획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항목별 협의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 시행시 환경영향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에는 사업자 책임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주무관	최영환	직권좌담담당	안경석	환경영향평가	530 2017. 8. 21.																																
주소자																																					
시책	환경정책과-8216	(2017. 8. 21.)	업무	하천계획과-2091	(2017. 8. 21.)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곡로 29. (구월동) (구월8) / http://www.incheon.go.kr/																																				
전화번호	032-440-3532	팩스번호	032-440-9883	fcmh1@incheon.go.kr	/ 대국민 공개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11 (남산1동) 1117호																																					
<p>II. 항목별 검토의견</p> <p>1. 자연환경의 보전 (평가서 초안 117쪽 ~ 333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결과 원고리수리(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243-4호)와 큰기리(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등 2종이 확인되었고, 양안이 농경지로 이루어진 중류역에서는 동결기에는 기리기류 등이 군집하여 먹이타 및 휴식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출현 시에는 생물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현지조사 사례에 의하면 굴포천 상류에서 땀뿔이(멸종위기야생동물 2급)가 출현(확인)하므로 정밀실태조사 및 출현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하천부지 내 경작실태를 파악하여 구간별 공간관리계획 수립시 현지 주변 식생을 중심으로 녹지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 ○ 굴포천 시점부 약 8.4km 구간에 하도환경개선 및 하도 통수능력 확보를 위해 오토도 계기 계획(준설심도 평균 1.05m, 준설량 약 600,000m³)을 수립하였으나 하도경비는 구간 정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생물종 및 생물서식지를 보전하여야 하며, 하도경비시 굴포천과 합류 연계(정천천 등)된 지점도 함께 검토하여야 함. <p>2.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평가서 초안 541쪽 ~ 593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포천 보축 19개소 10,925m로 계획하였으나 공사로 하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사 장비 투입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인근 주민과 협의하여 장비 분산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 실질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인천 부평구청에서 추진중인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연계(복원 1.2km) 방안을 검토하고 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여 백</p>																																				

(3) 경기도 / 서울특별시 은평구




<p style="text-align: center;">6월은 도국보훈에 달입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경 기 도</p>  </div> <p>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회신</p> <p>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1661(2017.5.22.)호와 관련입니다.</p> <p>2.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에 따라 제출합니다.</p> <p>붙임 검토의견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div> <hr/> <p>주무관 권동욱 자연환경팀장 (2017. 6. 27.) / 접수 하천계획과-2177 (2017. 6. 27.) 협조자 사법 환경정책과-8890 (2017. 6. 27.)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1. (택배로)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3614 팩스번호 031-8008-3539 / kimg2web@gg.go.kr / 비공계(5) <small>11280,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릉천외 5개소, 하천기본계획(2017)</small></p>	<h3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h3> <p><input type="checkbox"/>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계획명 :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input type="checkbox"/> 규모 : 69.14km(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6개소) <input type="checkbox"/> 위치 : 서울 은평·강서구, 인천 계양·부평구, 경기 부천·고양·김포 <input type="checkbox"/> 계획수립(승인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p><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인공구조물 설치 시에는 하천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계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 하천 생태계의 기능이 회복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토사 및 유류유출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비산먼지, 소음·진동발생으로 주변 정온시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따라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이상이면 사업의 허가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하천별 사업시행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해당될 경우(사업면적 3만㎡이상) 승인부서에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안허가 후 2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 원본, 선책이 아니라 발송입니다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은 평 구</p>  </div> <p>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의견요청(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회신</p> <p>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계획과-1661(2017.5.22)호와 관련입니다.</p> <p>2. 규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관계주민의견 제출건에 대하여 우리구 의견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div> <hr/> <p>주무관 권연범 환경관리팀장 (2017. 6. 27.) / 접수 하천계획과-2178 (2017. 6. 27.) 협조자 사법 영안도사과-19805 (2017. 6. 27.) 우 122-78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청길8 (우편물604) / http://eunpyeong.seoul.kr 전화번호 021351-7022 팩스번호 021351-5666 / ehoon@ep.go.kr / 대국민 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여 백</p>

(4) 인천광역시 계양구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의정거린 계양 최영장 행복도시"</p> <p>인천광역시계양구</p> </div> <p>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p> <p>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1661(2017.05.22)호 관련입니다. 2.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에 따라 우리구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p> <p>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인천광역시계양구</p> </div>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font-size: small;"> <tr> <td>주무관</td> <td>백준수</td> <td>환경보전담당</td> <td>김명열</td> <td>환경과장</td> <td>전용 3007. 8. 15.</td> </tr> <tr> <td>전화처</td> <td></td> <td></td> <td></td> <td>김광수</td> <td></td> </tr> <tr> <td>시행</td> <td>환경과-13086</td> <td>(2017. 8. 15.)</td> <td>일수</td> <td>하천계획과-2002</td> <td>(2017. 8. 15.)</td> </tr> <tr> <td>우</td> <td>21067</td> <td>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재로 86, (계산동)</td> <td></td> <td></td> <td>/ http://www.gyeonggi.go.kr</td> </tr> <tr> <td>전화번호</td> <td>032-459-5404</td> <td>팩스번호</td> <td>032-551-5742</td> <td>/ e-mail</td> <td>czanagis@korea.kr / 내국인 국제</td> </tr> </table>	주무관	백준수	환경보전담당	김명열	환경과장	전용 3007. 8. 15.	전화처				김광수		시행	환경과-13086	(2017. 8. 15.)	일수	하천계획과-2002	(2017. 8. 15.)	우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재로 86, (계산동)			/ http://www.gyeonggi.go.kr	전화번호	032-459-5404	팩스번호	032-551-5742	/ e-mail	czanagis@korea.kr / 내국인 국제	<div style="text-align: center;"> <p>-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p> <p>[결 포 천 검 토 의 건]</p>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2017. 6</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인천광역시 계양구 http://www.gyeonggi.go.kr</p> </div> </div>
주무관	백준수	환경보전담당	김명열	환경과장	전용 3007. 8. 15.																										
전화처				김광수																											
시행	환경과-13086	(2017. 8. 15.)	일수	하천계획과-2002	(2017. 8. 15.)																										
우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재로 86, (계산동)			/ http://www.gyeonggi.go.kr																										
전화번호	032-459-5404	팩스번호	032-551-5742	/ e-mail	czanagis@korea.kr / 내국인 국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2017.5) 』 의 국기여천 굴포천 계양구 구간에 대하여 여객 검토의견을 본안에 반영 요청함.</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p.2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하여, 환경지표의 유지·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수립하였음' 명시 - 굴포천의 수질등급은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IV~VI등급, 현지 조사결과 I b~IV등급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굴포천의 목표수질(III)등급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으므로 하천별 특성을 감안한 방안 수립이 필요함. (또한 평가서 p.601 '목표수질 설정 및 수환경보전대책수립, 유역내 침·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질개선대책'을 저감방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하천별 제시가 필요함.) ○ 평가서 p.29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결과, 양호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명시 - 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한 후 환경영향을 예측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적절한 저감대책 및 유지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토록 계획하여야 하며, 굴포천의 수질은 VI등급까지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기별 조사결과에 따른 종합분석을 정량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저감대책 및 유지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함. ○ 평가서 p.65, 280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계연보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나, 현장조사를 토대로 오염원 분포를 파악하고, 굴포천의 유입여부를 조사하여 수질오염 원인 분석이 필요함. ○ 평가서 p.34 대안제시 시·오니트 퇴적구간을 분류하여 축제 및 보축과 굴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굴포천은 퇴적도 굴착과 보축(평가서 p.243,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병행되고 있어, 대안제시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축제 및 시설을 설치 등에 의한 지형변화가 예상되므로 현재 지형 및 하도 형상, 기존 제방과의 연결성 및 하천의 유속, 경침, 수면경사 및 소류력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 공사 실시로 인하여 강우 시 계획하천에 대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우기 시 공사지랑, 시면 비닐덮개 설치, 현장여건을 고려한 가배수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에 따른 하천내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하천 구역내 오락방지막 설치, 유로변경(유수분리) 등을 설치하여 하천 오염 방지대책이 필요함. ○ 평가서 p.284 환경부 측정망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수질측정결과를 수록하였으나, 많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갈수기와 홍수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측정결과 분석이 제시되어야 함. ○ 평가서 p.297 '굴포천은 공장 및 도심지가 밀집되어 있고, 모수와 우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어 오염이 가중' 명시. 평가서 p.324 굴포천의 목표수질등급은 III등급, 평가서 p.325 개선대책은 일반적인 내용을 수록함 - 각 하천별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수질예측 결과가 제시되어야 함. ○ 평가서 p.331 굴포천의 유지용수공급사업을 제시하였으나, 현 시점의 적정 용량검토,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수록하고, 적정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유량 검토결과 제시가 필요함. ○ 평가서 p.424 표준단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수증부는 식생호안, 수중부는 자연석 또는 식생블럭으로 구간별 한 가지의 호안표준단면이 국한되어 제시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시행을 감안한 다양한 호안공법 제시가 필요함. ○ 평가서 p.419에 기점홍수위 상승(0.04m)에 따른 홍수위 증가, 평가서 p.393 굴포천의 계양구구간(No.4+049-10+000)은 평균 0.5m의 홍수위가 상승하 																														

<p>고 있음. 시설제방고가 높게 형성하고 있어 홍수시 월류 위험은 없으나, 하도굴착에 따른 하도가 완경사를 형성하여 굴포전(계양구간)의 유속은 0.6~1.8m/sec로 저하되고, 유속저하에 따른 유수흐름 지체 및 퇴적토 발생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하도내 유지유량이 자연유하가 가능하도록 하도 검사 계획 수립이 필요함.</p> <p>○ 평가서 p.431 교량계획의 경우 향후 타 사업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계획 검토에 따라 시행이 확정된 교량만 제외하고, 재가설 계획 수립이 필요함.</p> <p>○ 평가서 p.603 악취 저감방안으로 통수능력 확보 및 기존 시설물 능력검토 후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오폐수처리 준설계획 수립을 제시했으나, 퇴적물이 최소화하며 자연유하를 통해 지속가능한 굴포전이 될 수 있는 하도 단면형상 및 규모 제시가 필요함.</p> <p>○ 현재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어, 이에 대한 자료공유 및 업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우리구의 검토의견 수렴을 요청하며, 금회 의견은 본안에 반영이 필요함.</p>	<p>여 백</p>
<p>여 백</p>	<p>여 백</p>

(5) 인천광역시 부평구

<div style="text-align: center;">  <p>천이거 상공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부평</p> <p>인천광역시부평구</p>  </div> <p>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영유)</p> <p>제목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제출</p> <p>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1661(2017.06.22)호 관련입니다. 2.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리구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p> <p>붙임 : 제출서식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인천광역시부평구 인장</p> </div> <hr/> <table border="0"> <tr> <td>주무관</td> <td>정영희</td> <td>환경과/과장</td> <td>안산호</td> <td>환경보전과장</td> <td>이진연</td> <td>전화 2017. 6. 29.</td> </tr> <tr> <td>주소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명</td> <td>환경보전과-16573</td> <td>(2017. 6. 29.)</td> <td>업무</td> <td>하천계획과-2223</td> <td>(2017. 6. 29.)</td> <td></td> </tr> <tr> <td>우</td> <td>21354</td> <td>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부평구청)</td> <td></td> <td></td> <td></td> <td>/ http://www.icbp.go.kr</td> </tr> <tr> <td>전화번호</td> <td>032-509-8642</td> <td>팩스번호 032-509-7627</td> <td></td> <td></td> <td></td> <td>/ msvic@korea.kr / 비공계실</td> </tr> </table>	주무관	정영희	환경과/과장	안산호	환경보전과장	이진연	전화 2017. 6. 29.	주소지							시명	환경보전과-16573	(2017. 6. 29.)	업무	하천계획과-2223	(2017. 6. 29.)		우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부평구청)				/ http://www.icbp.go.kr	전화번호	032-509-8642	팩스번호 032-509-7627				/ msvic@korea.kr / 비공계실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회신서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div> <p>□ 총 관 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관련 오니도 외 굴포천 상류 퇴적물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대책도 검토가 필요함 ○ 은사시나무 꽃가루 피해에 대한 조사나 대책이 포함되어있는지 검토 ○ 굴포천상류에 방류시 수위상승(20,000→75,000)에 따른 동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 청진천과 감산천도 굴포천과 같이 수질이 개선되어야 함 ○ 하수 유입 등 관계망 확인 및 대책 강구 ○ 보축시 기존 교량의 상관관계 ○ 하상시설물 철거시 생태계 문제점은 검토 여부 ○ 하천의 어종 분포 확인 및 외래어종 번식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주무관	정영희	환경과/과장	안산호	환경보전과장	이진연	전화 2017. 6. 29.																														
주소지																																				
시명	환경보전과-16573	(2017. 6. 29.)	업무	하천계획과-2223	(2017. 6. 29.)																															
우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부평구청)				/ http://www.icbp.go.kr																														
전화번호	032-509-8642	팩스번호 032-509-7627				/ msvic@korea.kr / 비공계실																														
<p style="text-align: center;">여 백</p>	<p style="text-align: center;">여 백</p>																																			

(6) 김포시 / 부천시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민국 경기도 1번지 김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김 포 시</p>  </div> <p>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 제출</p> <p>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1661(2017.5.22.)호와 관련입니다.</p> <p>2.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p> <p>○ 한강하류 퇴적구간이 증가하여 홍수 발생 시 제방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홍수피해 예방과 어민들의 어로활동 예로 해소를 위해 한강하류의 전체적인 준설이 반드시 필요함(※의견제출부서: 건설도로과),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김 포 시</p> </div> <hr/> <p>수우권 황선영 환경정책팀장 대상요 환경정책대신 <small>258 2017. 6. 20. 박영준</small></p> <p>주소지 시청 환경정책과-12919 (2017. 6. 22.) 접수 하천계획과-2112 (2017. 6. 22.)</p> <p>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http://www.gimpo.go.kr</p> <p>전화번호 031-980-2245 팩스번호 031-980-2239 hydia1120@korea.kr 내국선 국제</p> <p style="font-size: 8px; text-align: center;">*의견제출 시 14시간 이내 접수 가능 *세.제.의.소.1173</p>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 우선이 되자라 편지! 「국민 Dream 부천시편의편지」 (2017. 6. 20.)</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부 천 시</p>  </div> <p>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환경관련 검토의견 및 주민의견서 제출(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p> <p>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1661(2017.05.22.), -1702(2017.05.24.)호와 관련입니다.</p> <p>2.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 및 '주민의견서 제출내역'이 없어 서식생략 하여 제출합니다.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부 천 시</p> </div> <hr/> <p>환경정책과 <small>258 2017. 6. 26.</small> 주무관 김광중 수임총괄팀장 백대리 환경정책대신 박영욱</p> <p>주소지 시청 환경정책과-23819 (2017. 6. 26.) 접수 하천계획과-2102 (2017. 6. 26.)</p> <p>우 14547 부천시 김주로 210. (중동) http://www.bucheon.go.kr</p> <p>전화번호 032-625-3166 팩스번호 032-625-3149 gaji@korea.kr 내국선 국제</p> <p style="font-size: 8px; text-align: center;">*의견제출 시 14시간 이내 접수 가능 *세.제.의.소.1173</p>
<p>여 백</p>	<p>여 백</p>

〈 표 2 - 2 〉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한 강 유역 환경청	<p>I.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 획 명 :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 위치 및 범위 <table border="1" data-bbox="300 517 1273 887"> <thead> <tr> <th rowspan="2">하천명</th> <th colspan="2">하 천 구 간</th> <th rowspan="2">연장 (km)</th> </tr> <tr> <th>시 점</th> <th>종 점</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td> <td>69.14</td> </tr> <tr> <td>굴포천</td> <td>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193-61번지</td> <td>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한강합류점</td> <td>15.23</td> </tr> <tr> <td>창릉천</td> <td>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신도리</td> <td>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한강합류점</td> <td>18.42</td> </tr> <tr> <td>대장천</td> <td>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td> <td>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면 신평유수지합류점</td> <td>5.44</td> </tr> <tr> <td>도촌천</td> <td>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td> <td>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면 한강합류점</td> <td>5.52</td> </tr> <tr> <td>봉성포천</td> <td>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마사리</td> <td>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한강합류점</td> <td>8.93</td> </tr> <tr> <td>서암천</td> <td>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td> <td>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봉성포천합류점</td> <td>6.87</td> </tr> <tr> <td>장월평천</td> <td>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td> <td>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한강합류점</td> <td>8.73</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내용 : 축제, 보축, 호안, 배수시설, 교량, 보 및 낙차공, 하도준설 등 ○ 계획수립자(승인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명	하 천 구 간		연장 (km)	시 점	종 점	계	-	-	69.14	굴포천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193-61번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한강합류점	15.23	창릉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신도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한강합류점	18.42	대장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면 신평유수지합류점	5.44	도촌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면 한강합류점	5.52	봉성포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마사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한강합류점	8.93	서암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봉성포천합류점	6.87	장월평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한강합류점	8.73		
	하천명		하 천 구 간			연장 (km)																																			
		시 점	종 점																																						
	계	-	-	69.14																																					
	굴포천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193-61번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한강합류점	15.23																																					
	창릉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신도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한강합류점	18.42																																					
	대장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면 신평유수지합류점	5.44																																					
	도촌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면 한강합류점	5.52																																					
	봉성포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마사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한강합류점	8.93																																					
	서암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봉성포천합류점	6.87																																					
장월평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한강합류점	8.73																																						
<p>II. 검토의견</p> <p>1.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검토의견은 굴포천(국가하천) 외 지방하천 6개소의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것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하천환경과 수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하고, 하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보전하는 등의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수립·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환경과 수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하고, 하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보전하는 등의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하천 중 중요 보호지역(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인근,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 생태자연도 1등급 인근 지역 등) 및 하천자연도 등급이 높은 지역은 보전 및 복원지구로 지정하여야 함. - 동 지역은 하천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수변식생 원형보존, 보 및 낙차공 철거를 우선 고려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과 인접한 하천의 하류부(장월평천, 대장천)와 국립공원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포함되는 창릉천의 상·하류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포함되는 대장천 하류부 등 중요 보호지역 인근 및 포함지역은 보호지역 간 연계성 및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간환경관리계획 수립시 최대한 보전 및 복원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치수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일부 불가피한 사업(축제 및 보축 등) 이외의 하천시설물 설치계획을 배제하였음 	부 분 영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한 강 유역 환경청	<p>2. 세부 검토내용 가. 계획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 및 관련 계획(중앙정부 상위계획 및 지자체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유역 단위의 일관성 있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계획 및 지자체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평가서는 치수관리를 위한 통수 단면의 확보 및 안전성 확보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환경보전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국가(지방)하천별 관리를 위한 법정계획이므로 하천별 상세한 현황과 보전시책, 시설계획 및 시설물 관리대장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별 상세한 하천현황과 보전계획, 시설계획, 계획평면도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강 하류역은 대도시를 유하하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군사적 사유로 하천 및 수변 생태계의 보전이 양호하게 유지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바, 이와 합류되는 지천에도 이에 준하는 관리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함. -특히 하구역은 습지, 철새도래지, 기수역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하천의 고유한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 하천구역인 바, 한강으로 합류되는 각 하천의 하류는 우선적으로 원형보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보전지구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강으로 합류되는 각 하천의 하류부는 현재의 이용상태, 주변 수변생태계, 장래 관련계획 등 포괄적 관점으로 조화로운 계획적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방향을 설정하였음 -또한,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 합류되는 창릉천, 봉성포천, 장월평천의 하류부 일부구간은 보전지구로 설정하였으며, 도촌천, 대장천의 경우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인근 고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고려하여 복원지구로 지정하였음 	부 분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산 국립공원 및 진관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한 창릉천 상류부는 보전적 관리 및 복원적 시설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산 국립공원을 일부 포함하는 창릉천 최상류구간은 공간환경관리계획 수립시 보전지구로 설정하여 보전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다만, 진관내동습지의 경우 약 100m 가량 왕복4차선 도로 및 주거지를 두고 이격되어 직·간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양안 제내측이 택지개발로 인한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친수지구로 구분하였음 	부 분 반 영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한강하류권역 환경영향	<p>나. 입지의 타당성</p> <p>1) 자연환경의 보전</p> <p>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p> <p>○ 각 하천별로 사업대상 하천 중 생태자연도 1등급,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철새도래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을 명기하고 사업대상 하천의 일부구간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들 구간은 수변식생 원형보존, 하류(합류)부 보전방안 등의 사업계획과 함께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 생태자연도 1등급,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철새도래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계획하천 구간을 제시하고 보전방안을 수립하였음</p>	반 영
	<p>○ 노란잔산잠자리(멸II)의 분포가 확인된 창릉천의 개수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서식지 보전 및 관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 노란잔산잠자리(멸II)의 분포가 확인된 창릉천의 개수계획 및 출현정점을 표기·제시하였으며,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육수생물에 대한 저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확인 시 해당 종에 대한 적절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p>	반 영
	<p>○ 한강 하류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적 관리가 필요한 하천구역이므로 본 구간에 합류되는 하천의 하류역은 하도 및 저수호안정비를 지양하고 하중도 등을 포함한 현재의 하천 및 수변식생 구조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여야 함.</p>	<p>○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과 인접한 장월평천 최하류역은 시설물계획을 배제하고 보전지구로 선정하여 보전적 관리를 우선 고려할 계획이며, 약 150m 이격된 대장천 최하류역의 경우에도 축제, 보축 등의 시설물계획을 배제하고 복원지구로 선정, 개선해나갈 계획임</p>	반 영
	<p>○ 하천이 현재 지니고 있는 유수역의 굴곡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수의 흐름에 있어 여울·흐름·괘의 반복적인 구배가 유지되어 다양한 미소서식처가 유지되어야 함.</p>	<p>○ 현재 계획하천의 선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구계획 수립 시 자연 그대로의 자연미와 자연경관이 보전 될 수 있도록 상류구간은 하상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임</p> <p>여울·흐름·괘의 반복적인 구배가 유지되는 창릉천 최상류 산간계류구간은 보전지구로 선정하여 보전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다양한 미소서식처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임</p>	반 영
	<p>○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에서 법정보호종인 쇠·큰기러기·노란잔산잠자리·금개구리가 발견되었으므로, 생태특성을 고려한 적정 보호방안을 수립하여야 함.</p>	<p>○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의 적정 보호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적인 보호 및 관리방안은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보호방안을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음</p>	반 영
	<p>○ 수변 및 하천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법정보호종(새 등)이 확인된 하천(구역) 및 정점을 명기하고, 하천-산림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p>	<p>○ 법정보호종(새 등)이 확인된 하천(구역) 및 정점을 명기하고, 하천-산림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음</p>	반 영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한 강 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구역의 정비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를 일정 기간별로 정비(격월제 또는 계절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천화 현상을 보이는 하천 구간의 정비는 갈수기를 활용하도록 공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연중 수량을 유지하는 하천의 경우 수중생물의 번식기 및 산란시기를 가급적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수경제성 분석을 통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향후 공사시행단계에서 하천생태계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수중생물의 번식기 및 산란기를 가급적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중도의 경우 물리적 영향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천정비 시 유념하여야 하며, 자연식생들을 최대한 보전하고 우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생군락에 대하여서는 이들의 분포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과업대상 하천내 하중도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하천 내 양호하게 형성된 우점 습지식생에 대해서는 공사지역 외 구간은 철저히 보존하고 저수로 준설을 배제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하천별 적용할 예정인 호안공법들은 구간별로 명확한 형식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하천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으로 적용하여야 함 - 식생의 도입을 저해하는 호안공법(자연석쌓기, 파라펫 등) 등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수변부 기능을 저해하고 육수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들은 적용을 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하천기본계획은 기본계획단계로 호안계획은 소류력 검토를 통한 치수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가능한 친환경적인 호안공법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하천식생의 활착과 주변 경관과 조화 등을 고려한 대안비교를 통해 친환경적인 최적의 호안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 	부 분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하천에 분포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하여 종별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대책(제거시기, 제거방법, 확산·재정착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함. <p>※ '생태계 교란 생물 현장관리 핸드북(2016, 환경부)' 등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하천에 분포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하여 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음 	반 영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한 강 유역 환경청	<p>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 또는 낙차공은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및 통수효과를 저해하므로 존치 및 재가설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가설 및 존치 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이를 지양하여야 함. - 보 및 낙차공의 존치·재가설 계획(11개소)을 재검토하고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제시 - 유속과 수량이 감소하는 곳에서의 생태적 기법에 대한 수단적 대안 적용 - 각 하천별 보 및 낙차공의 현황과 기능 분석 후 철거 및 존치 여부를 명시 - 시설물에 대한 현황(시설상태, 어도유무 등)과 존치·재가설 시 개선방안 등의 상세한 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물에 대한 수리계산 및 기능확인을 통해 노후화 또는 기능이 상실된 보 및 낙차공은 재가설, 존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가설시 여울형 등 자연친화적 공법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시설물 현황에 대한 제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음 	반 영
	<p>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하천 중 북한산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에 포함 또는 인접한 구간과 호안이 현재 자연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산지나 초지 등 자연경관 요소와 연결한 구간에 대해서는 호안 등 시설물 조성을 최대한 지양하여야 함. - 상기 구간에 하천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그 필요성을 명시하고 이격거리와 단면도, 공사용 가도 또는 경관시물레이션 분석도 등을 작성하여 시설물 설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부득이 호안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경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식생활착이 우수한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하천 중 주요 보호지역(북한산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에 포함 또는 인접한 구간과 자연형 호안 및 산지, 초지 등 자연경관 요소와 연결한 구간에 대해서는 보전 및 복원구간으로 지정하여 호안 등 시설물 조성을 최대한 지양하였음. - 상기 구간에 치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하천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시설물 설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및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음. - 치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호안 조성이 필요한 구간에는 배경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식생활착이 우수한 공법을 적용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인위적인 시설물 도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식재되는 식물 종은 현지 수변 식생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경관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위적인 시설물 도입을 최소화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경관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시설물(축제, 호안, 교량 등)의 형태, 규모, 색채 및 재질 등은 주변 환경에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시설물(축제, 호안, 교량 등)의 형태, 규모 등에 대해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 전·후 경관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지점에서 축제, 호안 등에 따른 계획을 반영한 경관시물레이션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계획하천에 대하여 주요지점에서 축제, 호안 등에 따른 계획을 반영한 경관시물레이션을 실시하고 경관계획을 수립·제시하였음 	반 영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한 강 유역 환경청	<p>라) 수환경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은 홍수피해 이력과 원인 분석을 통해 계획하천 유역이 갖는 강우와 홍수 등 수문량 크기와 빈도, 홍수피해잠재능에 따라 상위 치수계획에 부합함과 동시에 하천의 환경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별 홍수피해 원인 및 침수피해 현황 등을 검토하고 상위 치수계획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반 영
	<p>-이상기후 및 향후 유역 내 개발여건 등을 사유로 창릉천, 서암천, 장월평천에 대한 설계빈도를 80년→100년, 50년→80년으로 상향조정(354쪽)하여 과도한 시설물 위주의 치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p>	<p>-창릉천 하류는 도심지 구간으로 홍수 발생시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100년 빈도로 상향하여 계획빈도를 조정</p> <p>-최근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봉성포천, 대장천, 도촌천)은 계획빈도 80년 빈도로 채택하였으며, 최근의 이상강우, 홍수피해규모, 토지이용현황(농경지)이 비슷한 인근 하천의 설계빈도 등을 고려하여 서암천, 장월평천의 설계빈도를 당초 기수립 기본계획 대비 8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였음</p>	미반영
	<p>※위 3개 하천 총 34.02km 구간에 대해 축제 18.246km, 보축 22.918km, 보 및 낙차공·교량 재가설이 계획됨(9, 421~439쪽)</p> <p>-위 계획하천의 설계빈도 결정 시 과거 홍수피해 이력과 원인, 제내지 토지이용, 하천의 중요도뿐만 아니라 수환경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홍수방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빈도를 채택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별 침수피해 현황(침수 발생 시기와 원인 등)을 조사·제시하고, 금회 치수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 	<p>-과거 주요호우 및 태풍피해현황의 우선순위 및 피해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제내지 토지이용 현황, 하천의 중요도, 수환경성 및 빈도별 홍수위에 따른 저지대의 침수피해 구간을 분석하여 계획빈도 및 하천시설물 계획을 수립하였음</p>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 평가 시 설계빈도(무계획, 50년, 80년, 100년)에 따른 수단·방법을 검토·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빈도(무계획, 50년, 80년, 100년)에 따른 대안을 검토·제시 하였음 	반 영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한 강 유역 환경청	<p>-계획하천의 하천공사 시 소요되는 비용과 치수안정성 및 환경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치수안정성, 경제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아울러, 제방계획은 주거지, 농경지 등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p>	반 영
	<p>• 제방계획은 치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설물(주거지, 농경지 등)이 위치한 구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립 • 계획하폭 결정(362~390쪽) 시 획일적인 하폭확장은 지양</p>	<p>○보고서 상의 계획하폭 결정 표는 하천설계기준상의 최소 폭을 표현한 것으로 금회 하천기본계획상에서는 현 하폭 및 치수안정성을 고려하여 계획하폭을 계획하였음</p>	반 영
	<p>•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개수 전·후의 홍수위를 비교해서 제시</p>	<p>○개수 전·후에 대한 홍수위 비교표를 제시하였음</p>	반 영
	<p>•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북한산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의 인접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 계획을 지양하고, 원형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p>	<p>○중요 보호지역 인근 및 포함지역 등은 하천지구계획 수립시 최대한 보전 및 복원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치수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일부 불가피한 사업(축제 및 보축 등)이외의 하천시설물 설치계획을 배제하였음</p>	부 분 반 영
	<p>○굴포천의 경우 하도준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획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증빙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하도준설에 의한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준설 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p>	<p>○해당없음</p>	
	<p>○굴포천의 환경부 수질 측정망 조사 결과(285~288쪽) 4.1~18.2mg/l로 보통~매우나쁨이며, 현지조사 결과(297~308쪽) 1.4~6.7mg/l으로 좋음~약간나쁨임. -목표수질을 BOD기준 보통(Ⅲ)등급으로 설정(324쪽)한 바, 수질개선방안 및 보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p>	<p>○해당없음</p>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한 강 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14.5)」에 따라 상기 사업시행 전·후의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및 삭감부하량을 산정·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14.5)」에 따라 사업시행 전·후의 오염부하량 발생·배출부하량 산정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222호, '16.6.29)」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동 방침 제29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하천기본계획 시행으로 인한 배출부하량을 검토하여 각 지자체와 질오염총량 협의를 시행하였으며, 협의공문을 제시하였음 	반 영
	<p>2) 생활환경의 안정성</p> <p>가) 환경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저질에 대한 오염도 조사·분석을 통해 해당 하천의 퇴적물 오염도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하천저질의 오염현황은 해당하천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수립, 준설토 이용방안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함. ※하천 저질 조사를 위한 지점 및 분석 대상 물질 선정은 주변 오염원 시설 분포를 고려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저질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분석하여 해당하천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수립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저질 측정결과는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687호)과 비교하여 오염도를 평가하여야 함. 평가 결과가 '약간나쁨' 보다 나쁜 상태로 판정될 경우,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저질 측정결과는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687호)과 비교하여 오염도를 평가하였으며, 서암천은 전지점에서 "매우 나쁨", 그 외 하천은 '약간나쁨'으로 평가되었으며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음 	반 영
	<p>나)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시설물에 대한 과도한 신설, 재가설, 이설 계획은 하천 생태계의 훼손, 천연자원의 남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타 항목 검토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 하천 시설물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교량, 보 및 낙차공 등 하천시설물의 신설, 철거 또는 재가설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성상,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매립, 소각, 재활용 처리 목표량(율) 설정 -해당지역(시·군·구)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치, 거리, 용량 등을 파악하여 처리 목표량(율) 준수 가능 여부를 평가·반영 ※처리 목표율 계획 시 해당지역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참고하고,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도·광역시·특별시)의 기본계획을 참고 ※해당지역 내 요구되는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타 지역 연계처리시설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시설물에 대한 과도한 신설, 재가설, 이설 계획을 지양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것임 ○ 하천시설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은 향후 구체적인 계획수립단계인 실시계획 단계에서 반영토록 하겠음 	부 분 영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한 강 유역 환경청	<p>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세분화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하천법」제44조와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 지정 기준 및 이용 보전계획 수립(국토교통부, 2015.10)과의 연계성이 확인되도록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이용상태, 장래 관련계획, 하천자연도, 수환경성 평가 및 「하천법」제44조와 연계되도록 지구지정을 설정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수지구의 설정은 배후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이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한정하여 최소화하여야 함. -천변 자연경관 및 하천생태 현황이 양호한 구간을 친수지구 설정하는 것은 지양 -친수지구의 설정은 가급적 동일 구간의 하천 양안에 모두 계획하기보다는 한쪽 편에 제한하는 것이 필요 -각 친수지구별로 해당 구간 및 배후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하천변 개발계획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추가 제시하고 금회 계획을 통해 설정된 친수지구 구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특정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친수지구로 지정할 계획인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단계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등을 제시하여야 함. ※상위 및 관련 계획 상 천변 개발이 결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친수지구 설정이 필요할 시에는 해당 계획의 내용을 제시하여 그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권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준의 친수성을 지닌 구간에 대해서만 근린친수지구로 지정하였음 -하천자연경관이 양호하며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친수지구 설정을 제외하였음. -하천별 친수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계획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위성사진과 현황사진을 추가 제시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제외지 내 불법 경작지 및 농장의 경우 농업 혹은 축산활동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되어야 함. -계획하천 제외지 불법 경작지 및 농장 현황 조사 -불법 경작지 및 농장 보상 규모 분석 -불법 경작지 및 농장 관리와 관련된 계획 목표시점 제시 -단기간에 관리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 대책 수립 -제외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별 하천현황 및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한 강 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하천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하천관리 유도(558-563 쪽)의 구체적인 방안(협의체 참여범위, 활동범위, 만남의 주기, 주요 역할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동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대상 하천에 대한 하천자연도 등급산정 결과에서 2등급에 대해서는 보전지구로 선정하고 3등급은 복원지구로 지정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과업대상 하천 내 하천자연도 산정결과 2등급은 창릉천 상류 및 하류 일부구간 외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해당구간은 보전지구로 설정하였으며, 3등급 지역은 치수 안정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하천지구계획을 수립하였음 	부 분 반영
	<p>3. 기 타</p> <p>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검토의견과 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의견과 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 하였음 	반 영
	<p>나.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정량화 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서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가능한 정량화 하였으며, 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과 장래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적용근거를 제시하였음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음 	반 영
	<p>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각 하천별 정비내용(시설물 설치계획)을 총괄표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각 하천별 정비내용(시설물 설치계획)을 총괄표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반 영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인 천 광역시	<p>————— < 사 업 개 요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강서구,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 경기도 부천시·고양시·김포시 일원 ○ 규 모 : 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6개소 (L=69.14km) ○ 계획 수립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승인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p>I. 총 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 하천의 유지관리 등 치수·이수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하천계획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항목별 협의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사업 시행시 환경영향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자 책임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해당없음	
	<p>II. 항목별 검토의견</p> <p>1. 자연환경의 보전(평가서 초안 117쪽~ 333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결과 흰꼬리수리(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천연기념물 제243-4호)와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등 2종이 확인되었고, 양안이 농경지로 이루어진 중류역에서는 동절기에는 기러기류 등이 군집하여 먹이터 및 휴식터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출현 시에는 생물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사례에 의하면 굴포천 상류에서 맹꽂이(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가 출현(확인)하므로 정밀실태조사 및 출현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해당없음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인 천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부지 내 경작실태를 파악하여 구간별 공간관리계획 수립시 현지 주변식생을 중심으로 녹지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포천 시점부 약 8.4km 구간에 하도환경 개선 및 하도 통수능력 확보를 위해 오토 제거 계획(준설심도 평균 1.05m, 준설량 약 600,000m³)을 수립하였으나 하도정비는 구간 정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생물종 및 생물서식지를 보전하여야 하며, 하도정비시 굴포천과 합류 연계(청천천 등)된 지점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해당없음	
	<p>2.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평가서 초안 541쪽~593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포천 보축 19개소 10,925m로 계획하였으나 공사시 하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사 장비 투입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인근 주민과 협의하여 장비 분산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 실질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부평구청에서 추진중인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연계(복원 1.2km) 방안을 검토하고 하여야 함. 	○ 해당없음	
경기도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명 :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 규 모 : 69.14km(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6개소) ○ 위 치 : 서울 은평·강서구, 인천 계양·부평구, 경기 부천·고양·김포 ○ 계획수립(승인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p>□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구조물 설치 시에는 하천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계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 하천생태계의 기능이 회복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함. 	○ 향후 공사시행단계에서 인공구조물 설치 시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 하천생태계의 기능이 회복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임.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토사 및 유류유출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비산먼지, 소음·진동발생으로 주변 정온시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 시 토사 및 유류유출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비산먼지, 소음·진동발생으로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 영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별표4〕에 따라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이상이면 사업의 허가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이상이면 사업의 허가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임.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별 사업시행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해당될 경우(사업면적 3만㎡이상) 승인부서에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해당될 경우(사업면적 3만㎡이상) 승인부서에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겠음.	반 영
계양구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2017.5)』의 국가하천 굴포천 계양구 구간에 대하여 아래 검토의견을 본안에 반영 요청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p.2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하여, 환경지표의 유지·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수립하였음' 명시 - 굴포천의 수질등급은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IV~VI등급, 현지 조사결과 Ib~IV등급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굴포천의 목표수질(Ⅲ)등급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으므로 하천별 특성을 감안한 방안 수립이 필요함.(또한 평가서 p.601 '목표수질 설정 및 수환경보전대책수립, 유역내 점·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질개선대책'을 저감방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하천별 제시가 필요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p.29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조사결과, 양호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명시 - 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한 후 환경영향을 예측·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적절한 저감대책 및 유지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토록 계획하여야 하며, 굴포천의 수질은 VI등급까지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키 위한 주기별 조사결과에 따른 종합분석을 정량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저감대책 및 유지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함. 	○ 해당없음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계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p.65, 280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계연보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나, 현장조사를 토대로 오염원 분포를 파악하고, 굴포천의 유입여부를 조사하여 수질오염 원인 분석이 필요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p.34 대안제시 시 오히려 퇴적구간을 분류하여 축제 및 보축과 굴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굴포천은 퇴적토 굴착과 보축(평가서 p.243, 250)이 병행되고 있어, 대안제시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축제 및 시설물 설치 등에 의한 지형변화가 예상되므로 현재 지형 및 하도 형상, 기존 제방과의 연결성 및 하천의 유속, 경심, 수면경사 및 소류력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실시로 인하여 강우 시 계획하천에 대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우기 시 공사지양, 사면 비닐덮개 설치, 현장여건을 고려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에 따른 하천내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하천 구역내 오탁방지막 설치, 유로변경(유수분리) 등을 설치하여 하천 오염 방지대책이 필요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p.284 환경부 측정망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수질측정결과를 수록하였으나, 많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갈수기와 홍수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측정결과 분석이 제시되어야 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p.297 '굴포천은 공장 및 도심지가 밀집되어 있고, 오수와 우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어 오염이 가중' 명시. 평가서 p.324 굴포천의 목표수질등급은 Ⅲ등급, 평가서 p.325 개선대책은 일반적인 내용을 수록함 - 각 하천별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수질예측 결과가 제시되어야 함. 	○ 해당없음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계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p.331 굴포천의 유지용수공급사업을 제시하였으나, 현 시점의 적정용량검토,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수록하고, 적정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유량 검토결과 제시가 필요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p.424 표준단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수층부는 식생호안, 수층부는 자연석 또는 식생블럭으로 구간별 한 가지의 호안 표준단면이 국한되어 제시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시행을 감안한 다양한 호안공법 제시가 필요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p.419에 기점홍수위 상승(0.04m)에 따른 홍수위 증가, 평가서 p.393 굴포천의 계양구구간(No.4+049~10+000)은 평균 0.5m의 홍수위가 상승하고 있음. 시설제방고가 높게 형성하고 있어 홍수시 월류 위험은 없으나, 하도굴착에 따른 하도가 완경사를 형성하여 굴포천(계양구간)의 유속은 0.6~1.8m/sec로 저하되고, 유속저하에 따른 유수흐름 지체 및 퇴적토 발생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하도내 유지유량이 자연유하가 가능하도록 하도경사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p.431 교량계획의 경우 향후 타 사업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계획 검토에 따라 시행이 확정된 교량만 제외하고, 재가설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p.603 악취 저감방안으로 통수능력 확보 및 기존 시설물 능력검토후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오폐수처리물 준설계획 수립을 제시했으나, 퇴적물이 최소화하며 자연유하를 통해 지속가능한 굴포천이 될 수 있는 하도 단면형상 및 규모 제시가 필요함. 	○ 해당없음	

(표 계속)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 고
계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어, 이에 대한 자료공유 및 업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우리구의 검토의견 수렴을 요청하며, 금회 의견은 본안에 반영이 필요함. 	○ 해당없음	
부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관련 오토 외 굴포천 상류 퇴적물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대책도 검토가 필요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사시나무 꽃가루 피해에 대한 조사나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포천 상류에 방류시 수위상승(20,000→75,000)에 따른 동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천천과 갈산천도 굴포천과 같이 수질이 개선되어야 함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 유입 등 관계망 확인 및 대책 강구 	○ 해당없음	
김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축시 기존 교량과의 상관관계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상시설물 철거시 생태계 문제점은 검토 여부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어종 분포 확인 및 외래어종 번식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해당없음	
김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하류 퇴적구간이 증가하여 홍수 발생시 제방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홍수 피해 예방과 어민들의 어로활동 애로 해소를 위해 한강하류의 전체적인 준설이 반드시 필요함 	○ 본 과업범위와 해당사항 없음	-
서울시	○ 의견없음	-	
은평구	○ 의견없음	-	
강서구	○ 의견없음	-	
고양시	○ 의견없음	-	
부천시	○ 의견없음	-	